
일자리 창출 ·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
2010년 세제개편[안]

2010. 9. 2(목)

기 획 재 정 부

목 차

I. 세제개편 여건	1
II. 세제개편 추진방향	3
III. 세부 개편내용	
1. 일자리 창출 제고	4
2. 서민·중산층 지원	5
3. 지속성장 지원	7
4. 재정건전성 제고	8
5. 부동산세제 보완	8
IV. 향후 추진일정	9

I . 세제개편 여건

1 국내외 경제여건

- (대외경제여건)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, 국제금융시장 및 주요국 경기 등 불안요인이 상존
 - 최근 미국·중국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조짐이 있으나,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전망
 - * 2010년 세계경제 성장전망(%)
 - IMF : (09.10)3.1 (10.1)3.9 (10.4)4.2 (10.7)4.6, OECD : (09.11)3.4 (10.5) 4.6
 - 다만,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,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우려,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
 - 국제유가는 금년 들어 70불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, 향후 세계경기 회복속도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
 - 국제금융시장은 국제공조 노력 등으로 점차 안정을 회복하고 있으나, 당분간 높은 변동성 지속 예상
- (국내경제 동향) 내수·수출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서민생활 여건도 점차 나아질 전망
 - (성 장) 상반기 중 내수와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7.6% 성장
 -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연간으로 정부 전망치인 5.8%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
 - (고 용) 경기회복이 고용창출로 연결되면서 금년에 30만명의 일자리 증가가 가능할 전망(7월 취업자 : 전년동월대비 +47.3만명)
 - (소비자물가) 2%대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회복,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향후 물가여건이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(연간 3%내외)

2

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

-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
 - (일자리 창출 지원)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고, 성장잠재력 확충 등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
 - (서민생활 안정) 경제성장의 성과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
 -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필요

3

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

- 최근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 노력 착수
 - * (미국) 임기내 재정적자 절반 축소('09년 $\Delta 9.9 \rightarrow$ '13년 $\Delta 4.2\%$), 신규 의무지출 증가, 세입감면시 Paygo 원칙 도입('10.2)
 - * (영국) '16년 균형재정달성('09년 재정적자 $\Delta 12.6\%$)을 위한 재정책임법 제정('10.2)
-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정건전화 원칙 마련에 합의하고,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(6.5, 부산)
- 조세감면의 기득권화, 각종 정책 수립시 감면제도 신설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규모가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하는 상황
 - 저출산·고령화로 세입기반은 축소되나, 복지·통일비용 등 재정소요는 증가될 전망으로 비과세·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

Ⅱ. 세제개편 추진방향

2010년 세제개편 기초

- ◆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세제를 구축
- ◆ 경제회복의 성과가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·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
- ◆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·불급한 비과세·감면 정비,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추진



비전

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
(활력있는 경제 · 건전한 재정)

4대 기본 방향

일자리 창출
지원

서민생활
안정

지속성장
지원

재정건전성
제고

추진 전략

-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
-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지원 강화
- 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 강화

- 저소득 근로자 지원
-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
- 중소기업인 및 중소기업 지원
- 기부문화 활성화

- 신성장동력 확충 지원
- 기업 경쟁력 강화
-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보완
- 저출산 · 고령화 대응

- 과표 양성화
- 비과세 · 감면 축소
- 신규세원 발굴

Ⅲ. 세부 개편내용

1. 일자리 창출 지원

- (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) 기업의 투자 금액에 대하여 **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% 세액공제**하되,
 - 「**고용증가인원 × 일정금액**(고용증가인원 1인당 1,000만원, 청년 고용의 경우 1인당 1,500만원)」을 공제한도로 설정
 - ⇒ 투자세액공제혜택을 **신규고용창출 인원**에 비례해서 받게 함으로써 **고용창출형 투자**를 유도
- (외투기업 등에 고용 인센티브) 외투기업·지역특구 입주기업의 감면수혜 규모(3년 100%, 2년 50%)를 투자금액의 일정수준(50%~70%)으로 한정하고,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일정수준(20%)까지 추가감면 허용
 - * EU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10~50%정도 인센티브(현금·세제지원) 상한 설정
- (소기업의 기준을 고용친화적으로 변경)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(5%~30%)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제상 우대적용되는 소기업 여부 판정시 업종별 인원기준*은 폐지하고, 업종별 매출액기준만 적용
 - * 소기업 인원기준(조특령§6) : (제조업) 100명, (광업·건설업·출판업·물류산업·여객운송업·축산업) 50명, (기타) 10명
- (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) 청소업(3,029개), 경비업(960개), 시장·여론조사업(413개), 인력공급업(8,296개)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
- (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수준의 세제지원)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·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**3년 100%, 2년 50% 소득세·법인세 감면**
 - * (지원요건) ①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
 - ②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 등

- (가업상속공제에 고용인센티브 도입) 가업상속공제(공제율 40%)
대상을 확대[(현행) 중소기업 → (개정) 중소기업 + 매출액 2천억원 이하기업]하되,
고용확대 조건(상속후 10년간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연도의 1.2배 유지) 부여
- (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(약 22,000원) 면제 일몰연장) 지방경제
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제도를 2년 연장하되, 문턱
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면을 차등적용(수도권 연접시·군 50%, 그 외 100% 감면)
 - ▶ public 골프장은 2000.7월부터 개별소비세 면제중, 반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은 과세
 -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'08.10월에 서비스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
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('10년말까지)
- (장애인표준사업장*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) 장애인표준사업장에
대해 소득세·법인세를 4년간 50% 감면하여 고용여건이 취약한
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
 - *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% 이상 등
- (사회적기업*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) 취약계층(저소득층·장애인·고령자 등)을
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 수준(7%)으로 적용
 - * 저소득층·장애인·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%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
취약계층 비중이 30% 이상인 기업 등

○ 사회적기업 세액감면제도(4년간 50%)의 일몰연장('10년말→'13년말)

2. 서민·중산층 지원

- (일용근로자 소득세율 인하)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,
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(8%→6%)
- (음식점 등에 대한 VAT 세액공제시 우대제도 일몰연장) 음식·숙박업,
소매업 등 영위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
우대제도(30%추가공제, 결제액의 2→2.6%, 소매업의 경우 1→1.3%) 일몰연장
 - 음식점 등이 매입하는 농·축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시
우대제도* 일몰연장
 - * 기준공제(3/103) → 우대공제(유흥주점 4/104, 법인 6/106, 개인 8/108)

- (근로장학금 소득세 비과세) 대학생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근로장학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
- (기부금 제도 개선)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 단체에 따라 3단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2단계로 간소화
 -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
 - ┐ 개인 지정기부금 : 소득의 20% → 30%로 확대
 - └ 법인 지정기부금 : 소득의 5% → 10%로 확대
- (경차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) 경차소유자에 대해 유류세(교통세, 개소세)를 환급(연 10만원 한도)하는 제도의 일몰연장('10년말→'12년말)
- (대기업·중소기업 상생지원)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「상생보증펀드*」(신·기보)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(7%) 신설
 - * 대기업과 은행 등이 출연해 보증기관(신·기보)에 펀드를 조성하여, 유동성 애로에 빠진 중소기업에 저리(低利)로 보증 및 대출지원 시행
 - 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 일몰연장('10년말→'13년말)
 -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성 결제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*의 일몰연장('10년말→'13년말)
 - * 지급기한 30일 이내 : 0.5%(대기업 0.4%), 지급기한 30일~60일 : 0.15%
- (중소기업의 성장지원) 중소기업 졸업시 당기분 일반R&D 세액공제율*이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** 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
 - * 당기분 일반R&D 세액공제율 : (중소기업) 25%, (일반기업) 3~6%
 - ** 졸업유예기간(1~4년차) 25%, 그 이후 3년간(5~7년차) 15%, 2년간(8~9년차) 10%
 -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*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** 되도록 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
 - * 최저한세율 : (중소기업) 7%, (일반기업) 10~14%
 - ** 졸업유예기간(1~4년차) 7%, 그 이후 3년간(5~7년차) 8%, 2년간(8~9년차) 9%

3. 지속성장 지원

- ☐ (신성장동력) 현재 LED응용, 바이오제약·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R&D 투자보다 대폭 우대
 - * 일반 R&D 투자는 투자금액의 3~6%(중소기업 25%) 세액공제되나,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 투자는 투자금액의 20%(중소기업 30%) 세액공제
- ☐ ○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, 녹색기술, 차세대 LCD기술, IT융합기술 등을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
- ☐ (관세율 인하)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·부품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 인하(46개 품목)
 -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 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(50%) 제도 일몰연장('10년말→'12년말)
- ☐ (환경보전시설·의약품 관련 투자지원) 환경보전시설(10%)·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(7%)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 3년 연장
- ☐ (기업구조조정 지원)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*의 일몰기한 2년 연장
 - * ①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
 - ②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증여받은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등
- ☐ (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) '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(K-IFRS)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세법 보완
 - * 적용시기 : '10.12.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- ☐ (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)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증가한 제3자물류비용을 세액공제(3%)하는 제도의 일몰연장('10년말→'12년말)
- ☐ (다자녀 추가공제 확대)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
 - * 2자녀 50만원→100만원,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→200만원
- ☐ (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지원)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(300만원→400만원)

4. 재정건전성 제고

- (세무검증제도 도입) 의사·변호사·학원 등 사업자*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

* 사업서비스업(변호사, 회계사 등), 보건업(병·의원, 한의원, 수의사 등), 기타업종(학원, 골프장, 장례식장, 예식장, 부동산중개업, 유흥주점, 산후조리원)

- (비과세·감면 대폭 정비)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비과세·감면제도 대폭 정비(폐지 16건, 축소 3건)

-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하고, 일자리 창출·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

(예) 일반적 설비투자 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개편하고, 생산성향상시설·안전설비 등 각종 기능별 투자세액공제는 유지

- 제도의 실효성이 낮거나,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제도 정비

(예) 3년이상 장기보유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 일몰 종료
외국 관광객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

- (신규세원 발굴) i) 미용목적 성형수술*, ii)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 용역, iii) 성인 대상 영리학원(무도학원, 자동차학원)에 대해 부가세 과세 전환('11.7.1 이후)

* “쌍꺼풀수술, 코 성형수술, 가슴 성형술, 주름살제거술, 지방흡입술”에 한해 과세

5. 부동산세제 보완

-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* 완화제도(일반세율 6~35%)의 일몰을 2년 연장('10년말→'12년말)

* 다주택자 중과세율 : 2주택 50%, 3주택 60%

※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도 2년 연장('10년말→'12년말)

- 수도권(서울 제외)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* 요건 완화

- (현행) 5호·10년이상, 3억원·85㎡이하→(개정) 3호·7년이상, 6억원·85㎡이하

* 양도세 중과완화,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

IV. 향후 추진일정

1. 개정대상 법률 : 총 15개

☐ 내국세 : 14개

-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, 증권거래세법, 주세법, 농어촌특별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, 세무사법

☐ 관세 : 1개

- 관세법

2. 추진 일정

☐ 9월중 입법예고,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

☐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